

# 2018년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일 시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15시

장 소        청계별관 4층 지역발전본부 회의실

## 2018년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진행상황

(마이크 미사용 및 녹취 불능은...표시함.)

개 회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15시  
장 소 청계별관 4층 지역발전본부 회의실

### 간 사

연말연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39차 정책심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열 네 분 중에 아홉 분이 오셨으므로, 조례에 따라서 성원이 되었  
음을 보고 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신 행정2부시장님을 대신해서, 최만범 부위원장님께  
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만범입니다.

위원장님이신 행정2부시장님께서 오늘 외부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  
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8차 심의회 때는, 제가 해외출장을 가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제가 못했습니다.

6개월 만에 우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두 분 시의원, 위원님들에게도 만나 뵙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에는 입주신청기업평가가 없기 때문에, 다소 여유 있게 심의  
에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심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38차 심의에 참석 못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시작에 앞서서 참석 위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 사

저쪽부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김묵한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의회 박상구 위원님이십니다.

OOO 위원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간 사

서울시의회 김재형 위원님이십니다.

OOO 위원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간 사

신한회계법인 서혜정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법무법인 율촌의 박은수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산업연구원의 정은미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성욱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강서구 부구청장이신 문홍선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지역발전본부장이신 정수용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의를 이끌어주실 한국산업융합협회 최만범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간 사

나머지 위원님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나눠드린 자료에 보셨듯이, 심의안건 4건과 보고 안건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으로, 첫 번째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한 안건입니다.

두 번째는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 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안건입니다.

세 번째는 연구시설 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끝으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안건으로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관리 제도개선 추진 계획 외에 다섯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한 심의 건입니다.

우리 간사께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 해지 여부**

**제1호 안건설명**

간 사

페이지 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했었거든요.

했고, 그때 주식회사 OO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약간 설명 꺼냈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34차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하면, ‘착공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 단계인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완료했다면, 6개월 동안 유예를 더 해주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표를 보시면, 오늘 착공기업 기한 내에 안 된 게 6개 중에서 밑에 보시면, 1, 2, 3, 4 중에 주 000, 000, 000 이거는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하면 착수기간 내에 기준이 충족되는데, 00 같은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 위원회 때 기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000 등 3개사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기한 내에 건축심의 신청은 완료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완화된 기준은 충분히 한 걸로 검토가 됐고요.

주식회사 00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간 중에도 아직 건축심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18년11월19일 날 한 달 전이죠, 심의유예기간은 지났지만, 유예기간이 18년7월2일까지 인데, 한 4개월쯤 지난 시점이어서 심의가 된 거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원래 완화된 기준도 약간 초과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를 해주십시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 밑에, 착공 유예기간 기준을 미충족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주 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20일 동안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준 게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금부분 때문에 확인하고 한번 해줘라.’ 이렇게 된 거고요.  
OO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OO 사업 참여로 인해서 자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필요하시면 기업체의 이야기를 한번 들  
어보면 되고요.

부위원장

우리 간사께서 설명하신 안건과 관련해서 기업 관계자가 출석을, 여기  
와 계신가요?

시 관계자

밖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밖에 계십니까?

출석을 했다고 하니까, 필요시에는 회의실로 오셔서 기업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안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기업관계자를 불러서, 의견 듣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OOO 위원

OO은행으로부터 건물 신축비 여신심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데, 언  
제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OO에,

간 사

예.

OOO 위원

자금이 부족한데,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3페이지에 보시면, 공사착공지  
연사유 세 번째 항목에 보면, OO은행으로부터 건물신축비 여신심사 진  
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언제쯤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지 결과를.

간 사

그거는 기업체가 와서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들어보고, 그러면 의견 들어 본 다음에 종합 질의를 해보는 게 어떤가.

**제1호 안건심의**

부위원장

지금 OO에서 오신 거죠?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부위원장

잠깐 소개를 하시죠.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지.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저는 주식회사 OO의 OOO입니다.

부위원장

O000님.

그 옆에는요?

제1호 안건설명자A

O000 O00입니다.

부위원장

예, O00하고 O00이 두 분이 오셨는데, 원래 시정명령 기한을 지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심의신청을 하시게 됐잖아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우선 경위가 왜 그런지는 저희들이 자료는 일단 저희들이 봤는데, 여기서 간략한 이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경위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먼저 마곡지구 자연이 돼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끼

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서류에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초창기에 OO에 들어가서 2007년부터 침구와 의류봉제사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OO근로자들 000명 있었었고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000 사태로 인해가지고, 6개월 차단 됐었습니다. 그때 한번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하면서 지나 나오다가, 2016년도 2월 달에 OO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생산의 00%를 OO에서 생산 했었고, 그 당시에 포함 근로자는 OO 명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 기업이 회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보니까 정부의 어떤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저희는 바로 000에 나가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년에 걸쳐가지고, 기업을 안정화를 시키고 그래서 마곡지구에 대해가지고도, 사실 그 당시에는 기업 회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연구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기업을 안정을 시키고, 마곡지구에 연구 단지를, 연구단지에 입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소가 000에 있는데, 000연구소가 지금 재개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000연구소가 OO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본사가 OO입니다마는, 서울과 OO에 둔 이유는 기술력 확보가 사실 지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기술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마곡지구를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기관에서 사실 OO기업에 관련해서는, 유예를 해준다는가 연장을 해줬었는데, 마곡지구도 기업을 회생시키려는데 노력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당연히 마곡지구도 연장이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정명령을 받고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지금 강서구청에 건축심의를 받고 건축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건축허가 중에, 서류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될까 싶어서 오늘 연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간 사

자금 부분에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자금이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자금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잔고증명을 보여드렸습니  
다마는, OO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얼마요?

제1호 안건설명자B

OO. 자체자금 OO을 보유하고 있고, OO억에 대해서는 OO은행에서 건  
축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걸로 확인서를 받아와서 지난번에 제출했었습  
니다.

OOO 위원

OO은행에서 대출 협약한 거는 언제쯤 최종결정이 납니까?

제1호 안건설명자A

OO은행, 제가 좀, OO은행의 협약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O  
연구소가 있는 OO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는  
데, 혹시 거기가 정리되면 우리가 자금을 쓰고 혹시 그 부분이 우리 사  
업진행 중에 차질이 있으면, 대출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  
습니다.

대출은 차선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

OO은행에서 대출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돼도,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자체 자금이 OO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OOO 위원

설계는 다 끝났나요?

제1호 안전설명자B

예, 끝났습니다.

심의도 끝났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되어 있습니다.

OOO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한다면, 언제 착공계획이시죠?

제1호 안전설명자B

건축 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OOO 위원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1호 안전설명자B

예.

제1호 안전설명자A

지금 12월14일 지난주 금요일에, 강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했  
요.

저희도 협조요청을 해서, 최대한 연내에 허가를 내달라 이런 요청은 들  
어가는 상태인데, 혹시나 허가과정에서 보완요청이라든가 보완절차가  
있으면 1, 2주 정도는 소요될 수 있다 그런 안내는 받았습니  
다.

OOO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자금계획이 투트랙인데요.

하나 는 OO지구가 정리가 되면, 그 돈으로 착공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  
고, 안되면 O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제1호 안전설명자B

아니죠. 현재 자체 보유금이 OO 있습니다.

OOO 위원

OO, 아, 그걸로 먼저 하시겠다고요?

제1호 안전설명자A

예.

OOO 위원

알겠습니다.

000 위원

그래도 저희가 시정명령 기한을 상당히 여유 있게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건을 맞추지 못했던 사유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호 안건설명자B

첫 번째는 저희가 연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저희가 연기공문을 보냈었고요. 해달라는 부분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00 위원

이게 요건이라는 게 저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000 위원

다른 업체들도 들어왔고 그 요건에 맞춰서 다들 움직임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충분한 시간을 드린 상황인데도, 저희는 처음에는 자금이 설명들이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이 지연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000 위원

그런데 오늘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됐습니다.'라는 설명으로, '그러니 저희는 지금 준비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000 위원

그렇다면 왜 긴 시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연을 했고 오늘도 다른 업체들은 다 만족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OO만 충족을 못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유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일단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올해 이사분기 하반기였으니까 5월, 6월 경우에 자금유동성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면서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요, OOOO 사태 때문에.

그다음에 기업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3월에 아무래도 발표가 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기업전망을 어렵게 봤던 게 사실이고, 거기서 금융권에서 그런 OO이나 이런 게 풀렸던 시기가 4, 5월경, 그 이후에 사업, 작년엔 우리가 OOO 공장이 본격화 되면서 제고라든가 생산되는 게 회사의 매출로 이어져서 현금유동성으로 확보된 시기가 올해 4, 5월 경이었습니다.

OOO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게, 건축심의를 건축계획심의 신청한 게 굉장히 늦게 했잖아요.

11월 달에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4월경에 자금 여건이 괜찮아졌다면 그때는 왜 안 하신 거죠? 이 기한이 분명히 7월2일까지 득하게 되어 있는데.

제1호 안건설명자A

건축과정이라든가 그 당시 때도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건설사라든가 충분히 알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건설설계사하고 계약을 맺은 시기는 추석 직전이였으니까 8월, 9월경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준비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서울에 강서구 쪽에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고 힘들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몇 달 만에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OOO 위원

저번 회의 때 그때 참석 하셨었나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000 위원

그때 설명은 ‘000공장에 올인을 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신경을 못 썼다.’ 그런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1호 안전설명자A

예, 맞습니다.

000 위원

그거랑 연결이 돼서.

제1호 안전설명자B

지금도 000이 000에 계십니다.

국내에 안 들어오시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00입니다마는, 실무자들이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000에 이렇게 금방 다시 대안을 마련한 셈이지 않습니까?

제1호 안전설명자B

예.

000 위원

그러면 0000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제1호 안전설명자B

지금 들어가려고 해봤습니다.

000 위원

양쪽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제1호 안전설명자B

예, 0000은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000 위원

다 있으니까?

제1호 안전설명자B

예.

000 위원

그런데 사내 내부유보금이 은행계정은 00쯤 되던데요.

이게 다 법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법적인 그 한계를 다 제한하더라도

이게 다 가용한건가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다 가용한 부분이고,

OOO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제1호 안건설명자A

아무런 제약이 없는,

OOO 위원

여러 가지 것들을 충당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도 가능하다는 말씀  
이시죠?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OOO 위원

그 OO에 대해서, 어디죠?

OOO 위원

OO은행.

OOO 위원

예. 'OO은행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진행의향이라는 얘기는, 이 자산에 대한 평가 같은 건 다 완료가 된 건  
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산에 대해서, 그거는 처분하는 것을 대가로 이게 대  
출이 진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OO에 대해서는  
평가나 그쪽에서 다 끝난 건가요?

제1호 안건설명자B

마곡지구를 저희가 건설을 하면 마곡지구를 담보로 해서 가능하고요.

OOO 위원

마곡지구를 담보로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제1호 안건설명자B

첫째는 저희가 지금,

OOO 위원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1호 안건설명자B

지금 OO에 재개발 들어갔는데, 그 자금으로 1차 충당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 대출하는 거 하나로 되어 있고  
요.  
현재는 자체 자금이 OO이 있습니다.  
연말 해가지고요.

OOO 위원

자체자금 OO이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여기 제출하신 거는 OO인데,

제1호 안건설명자B

그거는 그전에 저희가 드린 거고요.  
연말을 기해가지고,

OOO 위원

나머지 OO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사업을 하면서 수금이라든가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유보금이 OO이  
있습니다, 오늘 부로요.

OOO 위원

유보금이 OO이 있다?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예금 잔고가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금 잔고가요.

OOO 위원

예금잔고가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OOO 위원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자산처분액이 OO이 지금 나와 있거  
든요.  
자산을 처분해서 OO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OOO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OOO 위원

그건 아닌가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그거는 지금 현재,

OOO 위원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이 OO이 있고, 자산처분액 OO에서 OO 갖다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OOO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산처분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OO이 있다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1호 안건설명자B

현재는 잔고가 OO이 있는 게 맞고요.

저희 현재 오늘 잔고로서는요.

제가 매일 그걸 보기 때문이에요.

OOO 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있습니다.

오늘 잔고를 증명해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OOO 위원

저희 판단은 오늘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내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죠?

제1호 안건설명자A

지금 저희가 잔고증명 있는 게 OO이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고요. 배포 자료예요.

OO이 첨부되어 있고, OO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지난 10월 말경의 잔고인데, 11월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돼서 유동성이 조금 더 확보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OOO 위원



설명을 붙이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그냥...다 붙인 것 같네요.

OO은행에 보니까 OO.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1-1자료에 보시면,

OOO 위원

이걸 다 더하면 그렇게 되는 이 말이네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OO인데 OO으로 보고, OO은행에 1-3번 자료에 보시면 OO이 있고 1-7 말미에 총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OO이 있고, OO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OOO 위원

다 합은 OO이다?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OOO 위원

잔고증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도, 사실 기업 내에서는 연말에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잔고증명이구요.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상여금도 줘야 될 거고, 또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그러는데 토탈 다 해서 OO인데, 그럼 사업자금으로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제1호 안건설명자A

평소에 유동자금은 한 OO에서 OO정도 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

OO에서 OO?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제1호 안건설명자B

참고로 저희는 어음을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주결정 일주일 결정하기 때문에,

OOO 위원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계산을 해놓으신 거예요? 마곡단지.

제1호 안건설명자B

OO을 지금,

OOO 위원

이거를 다 쓸 게 아니잖아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OOO 위원

아까 말씀하신 OO이 있고 OO이 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OO어치 다 건축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1호 안건설명자A

배포자료 3페이지 봐주시면, 저희가 사업 예산하고 재원을 반영해 봤습니다.

OOO 위원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이 답답,

OOO 위원

오늘 OOO이 못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OOO이 왜 못 나오셨죠?

제1호 안건설명자B

OOO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OOO 위원

어디요?

제1호 안건설명자B

OOO에 계십니다.

제1호 안건설명자A

OOO 마련이 어려워가지고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OOO 위원

총 사업비가 OO 들어가는 거예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OOO 위원

15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원래, 처음에 계획 짤 때 이렇게 짰었나 봐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집행이 됐고, 2018년도, 19년도 예산이 약 OO 있는데, 현재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금이 OO이고,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진행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OOO 위원

지금 12월 중순이 넘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OOO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확실하게 설명으로 해주신다든가 그래야지, 지금 오신 게 단순히 그냥 일단은 연장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내년도 사업 얼마 잡고 계세요?

그거 계획도 지금 없잖아요.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제1호 안건설명자A

내년도 매출목표하고 이런 거,

부위원장

매출이 아니고,

위 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OOO 위원

내년에 OO이든, OO이고, OO이 됐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OO을 내년에 다 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 원

공사비요, 공사비.

제1호 안건설명자A

공사비 실제로 OO이 지출이 끝입니다.

OOO 위원

내년도예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2019년도에.

OOO 위원

지금 현재 잔고가 OO정도, OO 있는데, 기업은 계속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재고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도 사셔야 되고 급여도 주셔야 되고 그러면, 아까 OO 정도가 유동자금으로 계속 쓰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지금 OO에서 OO 을 쓰시면 OO이 남죠.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OOO 위원

그 개념으로 지금 투자를 하신다는 의미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앞으로 OO이 2019년에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재원이 어떻게 확보되고, 어떤 비용항목으로 지출이 될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게 짜여있지 않으시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OOO 위원

예.

제1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월평균 OO에서 OO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OO에서 OO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의 그런 갭은,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매출 원가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OOOO 이슈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건실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그렇게 일어나면,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OO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현금 당기순이익이 OO에서 OO 정도는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조이기 때문이에요.

OOO 위원

OOO하고 무관하게 그런 건가요?

OOO이 그 안정화 돼서, 그로부터 자금이 확보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OOO,

OOO 위원

전후가 다르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OOO 위원

그런데 사실 OO산업이라는 게, 세계경제하고 연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유동성도, 어떤 때는 잘되고 어떤 때는 또 안 되고 이랬을 때, 만약에 지금 예상하시는 자금흐름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1호 안건설명자A

OO업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OO개 업체들이 과점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OO가 기존에 시장 O위 기업이었고요.

그거는 오프라인 매장을 주로 하는 기업이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OO이 급부상해서 시장 O위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OO OO라는 이름으로 지난 29년간, 약 30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늘 OO 안에 있는 건실한 기업이었고요.

우리가 OOOO에 진출하던 당시에도 기업신임도라든가, 이런 조사를 상당히 하고 어느 정도에서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OO에 우리 기업들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게 부실한 기업은 아예 진출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OOOO이라는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라든가 이런 게 봉착하기는 했지만,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건실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O라는 게 사실 저희도 OO, OO, OOO 이렇게 계속 OO의 기지는 옮겼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노하우, 원단생산에 대한 첨단기술 이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OO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물 없는 칼라사업, 기존에 폐수가 배출되는 그런 염색사업을 떠나서, 디지털 나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잉크젯프린터 그거를 크게 키운 기계에다가 원단을 직접 나염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1호 안건설명자B

자금 부분은 매출채권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어음을 끊으면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저희는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어음을 안 끊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금이 다른 데 소요된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회사가 OO, OO, OO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부실채권도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구두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서류와 문서로 제출을 하셔야,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부위원장

우리가 보고 할 텐데, 확신이 들어갈 텐데, 구두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믿어야 할지, 제대로 그게 정말로 가는 건지 확신이 안 선다는 말이

죠.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에 대한 자료제출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난처한 입장입니다. 지금.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자금결제, 자금조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는 합니다.

OOO 위원

여기 잔고증명에 보면, 대략적으로 10월 달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돈들이 다 지금 있어요.

그전에는 거의 금액들이 없다가, 지금 10월경에 일시적으로 OO 줌 넘고 OO 넘고 OO 넘고 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시다.

OOO 위원

아니 방금 준 자료에,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OOO 위원

그렇잖아요. 10월26일, 10월25일 전부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그때 뜨셨나 보죠.

제1호 안건설명자A

혹시라도 그런 우려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잔고증명을 직전 3개월 평균으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OOO 위원

그거를 제출을 하시지 차라리.

제1호 안건설명자B

저희들이 자금 부분을 이렇게 또,

제1호 안건설명자A

자금부분은 솔직히 좀,

제1호 안건설명자B

저희가 한번...했기 때문에.

OOO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요, OOOO 폐쇄가 돼서 경영상에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 지연됐다 이게 설명의 요지였잖아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OOO 위원

그러니까 OO에서 그런 기업에 대한 애로지원차원에서 감안해서 그런 공문도 받으시고,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OOO 위원

지금은 자금이 이상이 없다는 거고.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OOO 위원

자금이 이상이 없는 부분을 저희들은 중요하게 보는 게, 과연 건물,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자금 문제 때문에 건축이 지연되면 나중에 또 안 되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OOO 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설명이 되고 증거자료가 있고 하면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불확실하니까 위원님들이 더 이거 논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결론을 내야되나 그러시고 있는 거잖아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자금상에는 회사경영상 어려운건 다 극복하신 거예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극복했습니다.

000 위원

저번 달에는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제1호 안건설명자B

아니 어느 정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00 위원

그거는 5월 달에 조금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저번 달에 오셨을 때도 000 투자하고 0000 이후에 계속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제1호 안건설명자B

힘들게 왔지만 지금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000 위원

해지돼야 되냐 마냐 결정하는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000 위원

건물 만약에 건축허가 받으면 언제까지 건물 준공할 수 있어요?

제1호 안건설명자B

바로 착공식 올리고 바로 진행 할 겁니다.

000 위원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건축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 안 잡으신 거예요?

제1호 안건설명자B

있습니다. 건축,

000 위원

언제쯤 준공하실 건지, 그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2019년 11월에 준공하고,

OOO 위원

19년 11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12월에 입주하는 걸로.

부위원장

예,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자금부분은 우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OO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 오늘 준비가 다 서류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차후에라도 딱 10월 달 한 달만 잔액 증명이 아니고, 그 이전 10개월 치라도 쪽 계속해서 그 정도 금액은 잔액증명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가능합니다.

OOO 위원

그거 약속을 하고 가세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조금 미비합니다마는, 설명은 업체에서 나오신 두 분의 설명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쟁점을 논의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설명자B

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호 안건설명자A

자료를 찾았는데요.

제출해서,

부위원장

예, 제출 하십시오.

실무진한테.

OOO 위원

놔두고 가세요.

제1호 안건설명자A

예.

( 설명자 퇴장 )

부위원장

자,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미흡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가 참 난처한 입장인데,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여기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회의자료 3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

부위원장

3페이지요? 예.

간 사

유사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예.

간 사

주 OO 같은 경우 유사한 사례인데, 자금 확보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라고, 위원회에서 위임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방식 같습니다.

전체 모으기가 쉽지 않겠다,

OOO 위원

그때도 자금확보가 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자료 같은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위 열어가지고 그때 확인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유예승인을 했는데, 그때 혹시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님 계신가요?

위 원

...

000 위원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000 위원

기억이,

000 위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십니까?

000 위원

가물가물 하지만 어쨌든 나름 기간 동안에 자금확보 뭐 은행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거자료로서 갖고 오셔서, 저희가 허가를 인정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 이렇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소위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데, ‘이 법 자체의 취지가 그래도 우리가 살리자.’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안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의사결정권을 소위원회한테 한 번 더 이향을 해 주셨던 그런 과정이었던, 맞죠?

000 위원

예.

000 위원

제가 기억이, 그랬던 것 같은데.

000 위원

마곡의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요, 저희가 기업을 육성, 육성하고 거기서 뭔가 R&D 단지로서 번듯하게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기업지원차원이 저희들이 강해요, 컨셉 자체가요.

그런데 다만 2년 내에 착공, 그다음에 그 후로부터 3년 이렇게 해서 준공인가요?

관계자

예.

000 위원

총 5년 저희가 기한을 정한 거는, 땅 분양받고 공사도 안하고 착공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한을 둔거거든요.

다만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고 하면, 뭔가 이게 객관적으로 늦었지만 ‘객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건축심의를 신청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000 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000 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자금이 충분하게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자, 이렇게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신 거죠, 사실은.

000 위원

제 의견은 이 경우는 소위원회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이게 매출액 00% 가까이를 0000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게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지의 사실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을 000 쪽으로 다시 공장을 갖다가 새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정도 안정을 시켰고, 그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00을 어디서 잠시 유통을 해서 잔액, 잔고증명을 받은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지니까, 이거는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걸 사유로 해서 해지를 해 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게 0000의 문제가 결국 이런 사태로까지 사회에 파장을 주는 것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만 00 허위문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확인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도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000 위원

앞전에 000이 오셨던가요?

000 위원

아니요, 그때도 안 오셨어요.

간 사

OOO 안 오셨어요.

OOO 위원

앞전에도 안 오셨어요?

간 사

OOO에 있어가지고.

OOO 위원

그런데 저는 꼭 OO가 와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의지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도, 건축계획서도 지금 하나도 짜임새가 없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그 회사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실무진인지 그런 의구심이 든다 말이죠.

이 예산에서도 보니까 지금 본인들이 자료를 깔아준다고 깔아줬는데 보니까, 우연치 않게도 전부 10월 달로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은 OOOO의 피해자로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점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전에 OOO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내용 없이 그냥 승인해 주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금계획이 소위원회 구성하면 좋겠지만 부담을 느끼실 거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 다음 때까지 기한을 조건부로 연장을 해서, 그때까지 자금계획이 제대로 안서면 해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다음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나요? 어떻게 정하나요?

간 사

안건을 봐서,

부위원장

이거를 하나의 안건으로 생각하면 그때 또 모여야 되는 건가요?

간 사

하나 가지고 하기는 쉽지는 않겠는데,

OOO 위원

어떻게 보면 소위가 효율적이죠.

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책 다 모여해라,

간 사

모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위임을 해줘가지고,

간 사

소위에서 해야 될 쟁점을 딱 정했거든요.

이거이거를 봐라하고 소위원회에서 딱 한 상황이었습니다.

OOO 위원

그게 좋겠네요.

OOO 위원

오늘 몇 건을 뒤로 미루면 되잖아요.

OOO 위원

오늘 저도 OOO 위원님,

OOO 위원

오늘 너무 많아요,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OOO 위원하고 오늘 오면서 얘기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안건을 이거 제대로 심의하려고 보고 받으려면 하루 갖고도 힘들어요.

OOO 위원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보고 안건은 저희들이 보고하는 거니까요.

간 사

결정하는 게 아니고,

000 위원

실제 안건은 4건입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받은 재무자료, 자금조달에 관한 자료를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서 판단 하셔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 번 수고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000 위원

동의를 하고요.

승인시 최대유예기간 6개월이면 1월2일까지인가요?

간 사

예, 그것도 좀 걸립니다.

000 위원

이게 하실 수 있나 해서요.

소위는 언제 하실려나.

간 사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혹시 또 보완이 필요하면 1월 달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그렇죠.

000 위원

전혀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 사

그러면 최장기간이 되는 거죠, 케이스가.

1, 2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

000 위원

‘이거는 제도에 의해서 6개월까지인데, 이거를 또 넘기나.’라는 게 이거는 좀 안될 것 같아서요.

부위원장

또 넘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선례가 또 되니까.

간 사

그전 거는 5개월 2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6개월 연기, 6개월 또,

부위원장

또 넘어가니까.

간 사

그렇기는 한데,

부위원장

정책적인 판단을 서 그렇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간 사

소위원회 하게 되면,

OOO 위원

소위가 넘더라도 이 기간은 이거는 넘는 거는,

OOO 위원

본다면 건축심의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OOO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가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새롭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어쨌든 잘 체계를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5월이었다면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런 백업자료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제출을 하셨었더라면, 조금 더 오늘 보완자료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때는 그런 것들을 주지 못했,

OOO 위원

저희가 간혹 가다 사무실에서 공무원노조, 그거 잠깐 하니까 이해해주시고요.

OOO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하는, 저기서는 1월까지라도 유예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1월2일 안으로 착공을 안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날짜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000 위원

건축심의회가 그때 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

부위원장

1월2일까지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럼 해지를 시키고,

000 위원

굉장히 심각해요.

000 위원

여기 보니까 건축심의회는 11월19일까지 완료가 됐고 건축허가신청이,

000 위원

허가.

부위원장

허가.

건축심의회가 아니라 허가.

000 위원

건축허가 중에, 건축허가 할 때 보완하고,

부위원장

그렇죠, 보완절차가.

000 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서,

부위원장

예, 그런 겁니다.

000 위원

1월2일까지는 매달려서라도 착공해야지.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착공을 한다는 것은, 1월2일까지 사실상 이 위원회에서 승인했든 안 했든 간에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인 안 한다고 해서 1월2일까지 착공 안 하면 지금까지 12월, 2010년7월2일부터 해서 8월, 9월, 10월, 11월 다 지나갔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걸 승인을 안 해서, 이게 착공 안 하고 회수하고 해야 하는 절차를 거꾸로 갈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우리 서남권사업과에서 저쪽에서는 이걸 안이하 게, 이 위원회 심의하고 기한연장 하는 걸 가벼운 걸로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약속을 했으면 토지에 우리 적정하게 공급해서, 우리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육성되는 기업이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선의의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모습이 있어야 여기서도 신뢰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볼 때 심기가 불편한가, 심기가 불편하다는 게 감정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실무를 파악하고 오신 분들이, 건축하고 이런 실무파트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언제 착공해서 노력해서 이때까지 착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업무를 자세히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못해서 혈기가 안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그렇죠.

000 위원

1월2일 안에 착공, 혹시 실무자들도 이런 것도 이렇게 1월2일까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있는지를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챙겨보도록 하는데 하여간 저 사람이 별로,

000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이다음에도 또 나가요.

‘그게 일단 분양만 받고 보자는 그 양식에 준해서만 이러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마곡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많더라.’라는 부분이죠.

전반적인 부분이.

000 위원

제가 조금 헛갈리는 게요, 오늘 너무 늦게 오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늦게 오신 건 맞고, 저희가 승인을 하면 오히려 더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 거는 1월2일까지이고, 여기서 지금 승인을 해 버리면 저게 1월2일까지 안되면 다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승인을 해도 하지 않아도, 이게 너무 여지가 없어서 여기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부위원장

그렇죠. 남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OOO 위원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1월2일까지는 기다린다.’라는 걸 지금 승인하는 셈이거든요, 승인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소위로 넘긴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기한 넘어가지고 소위를 하는 거는 딱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월2일이 기한이라고 하면 승인을 하나 하지 않으나 사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할 일은 아니겠느냐, 오히려.

OOO 위원

예.

OOO 위원

저희가 이걸 넘어서 소위를 1월 달에 다시 연다고 그러면, 오히려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좋을지.

저는 ‘기타 서류나 그런 거 외에도, 절차상으로 이게 의미가 있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냥 가장 편한 방향은 승인을 한다면, ‘1월2일까지 모든 것을 완비해라, 안되면 절차대로 가겠다.’ 이거 인거고요.

OOO 위원

그게 지금까지 정한 원칙에 가장 부합된 거죠.

OOO 위원

안 그리고 소위를 이후에 다시 연다고 그러면,

부위원장

연장해준다는 얘기겠죠.

OOO 위원

결국은 연장을 해준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를 열건 다음으로 넘기건 오히려 더 연장을 해주는 상황이 돼서, 어떤 쪽으로 될지는 원칙에 따라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아주 쟁점을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1월2일까지 연장을 해 주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연장까지 하느냐, 그 이후에까지 가는 걸 승인을 해 주느냐 이 문제로 다시 귀결이 되는데.

OOO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법률에 의하면, 1월2일인가요? 그때까지가 아니라 법령의 근거에 의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따온 건가요?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간 사

할 수 있다는,

OOO 위원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부위원장

강제규정인가요? 아니면 임의규정인가요?

OOO 위원

임의규정인거죠.

부위원장

임의규정입니까?

간 사

지방 같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OOO 위원

예.

간 사

가급적이면 연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우리 같으면 이게 만약에 생기면 최장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OOO 위원

그러니까 판단유보를 첫 번째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진짜로 이 기업이 그 계획에 맞게 착공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이죠.

OOO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시정을 명하고, 그런데 우리는 6개월 지난 다음에 6개월을 한 번 더 주는 걸로 지금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6개월을 넘기면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거죠.

부위원장

또 만드는 거죠.

OOO 위원

오늘처럼 벗어나면,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하나 있는 게 사실은 OO에서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 그거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6개월을 넘는 선례를 만들 거냐 이 부분은 고민인거고요.

그다음에 원칙대로 그냥 6개월만 주면, 1월2일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위원장

예.

OOO 위원

그걸 넘기냐, OOOO 기업으로서 그걸 넘기냐 마냐 이 문제만 정리하고 정리하시죠.

부위원장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결정을 해버리는 게 어떠신가요?

‘1월2일까지 주느냐, 아니면 연장하느냐.’ 두 안을 놓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가부결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은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다 내용들이.

시간만 자꾸 갈 것 같아서요.

간사님 우선 의견 있으세요?

간 사

제가 뭐 발언권을 주시니까,

부위원장

기회를 주시자는 의견이지요?

간 사

저는 1월 달까지는 해서, 그냥 그때는 가차없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1월2일까지 하고,

간 사

아니요. 1월말까지,

부위원장

1월말이요?

간 사

다시 선례가 생기기 는 생기는데,

부위원장

1월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간 사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건축심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심의완료하고 허가는 행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 회사입장에서는 할 거는 다,

부위원장

그때까지 만약에 허가 이거 보완절차가 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간 사

그때는 원리원칙대로 해지를 통보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그렇게 유하게 해버리면, 참 믿을 수가 없네.

000 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를 든다면,

000 위원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요.

000 위원

‘건축허가 하는데 평균적인 기한이 한 달이다.’ 그거에 근거해서 1월 말 이라든가 그러면 몰라도 그냥 1월말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000 위원

중요한 거는 2014년 때부터 토지를 갖다가 양도를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4, 5년 기간이 지났는데, 그때는 그냥 분양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밖에 안 했던, 준비과정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위원장

그러면 결정을 ‘1월2일로 결정을 해가지고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한 달이 됐든 얼마나 됐든 뒤에 1월2일 이후에까지 연장하는 기간을 뒤서, 그때까지 준비되는 상황을 보고, 이후에 상황을 기업의 입장을 봐서, 연장해주자는 두 안으로 일단 귀결을 하고요.

000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안에,

부위원장

두 번째 안중에서도 기간이,

000 위원

안을 만약에 명분을 찾자면,

부위원장

예, 찾자면,

000 위원

1안은 1월2일까지 정해진 원칙대로 1월2일, 우리 위원회의 원칙.

부위원장

예.



000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1월 말인데, 명분을 찾자면 해당 월에 1월2일이  
짱아요.

부위원장

1월2일.

000 위원

해당 월의 말까지인데, ‘다만 이 경우는 0000 폐쇄로 인한 그런 것이  
기 때문에 해당 월의 마지막 날짜까지, 1월2일이지만 특수한 사정이라  
는 것을 감안해서 그달의 말일까지 한다.’ 이렇게 명분 삼아서 2안으로  
정리해서 의견들을 물어보고, 다수로 그냥 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000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보통 중소기업들이 막 굉장히 자금압박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조  
정도 하시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000도 진  
출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회사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놓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라든가 마곡지구에서 이런 어떤 데드라인이 있으  
니까 이거 준비하십시오, 준비 하십시오 이런 어떤 공지사항들이 적기에  
나가고 있었던 건지 한번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이, 담당자가 그만뒀을 수도 있거든요. 구조조정  
때문에요.

그러면 미처 챙기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사태를 알게 되고 수습을 하  
다 보니,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을까.

000 위원

축박하다.

000 위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그런 회의 중간중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문들이 담당 회사에 나갔었나요?

관계자

예, 맞습니다.

17년 12월 30일 착공기한이 만료가 된 날이어서 그 날짜로 시정명령을, 저희가 작년 17년 12월 30일 하다보니, 000에서 공문이 온 게 지난 3월 달이거든요.

그 사이에 000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한 경향이 되다 보니까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000 위원

왜냐하면 기업을 많이 경험을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부재다 보니까 우편물조차도 회사에서 떠도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관계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서 연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000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음은 비슷하실 거예요.

0000 때문에 피해를 받고 해주고는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계속 찾다보면 저희가 그 원칙에 어긋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다른 걸 찾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1월2일까지 그거를 할 건지 말건지 딱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다른 선례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원칙을 벗어나서 하다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이 회사 입장에서도 물론 잡고 가고 싶겠지만, 오히려 더 이걸 봤을 때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만들고 만들다 보면 원칙은 여기 하나 있는데, 선례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자, 그러면 종합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죠.

000 위원

그런데 이게 1월2일은 벌써 눈앞에 와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산업집적법에 42조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데요.

이게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OOOO 사건이 벌어진 건 맞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법원의 해석도 그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거예요.

입주계약을 이분이 OOOO 사태를 예측하고 이렇게 입주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로 OOOO에서 OO 가까이 매출이 다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착공하기에 그런 갑작스러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착공보다는 공장을 갖다가 돌리고 해고 하지 않고, 공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OOO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우리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그다음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게 반드시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이게 이런 선례, 승인을 이렇게 6개월간 이렇게 유예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거에 의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하는 건데, 이것을 또 우리가 해지했다고 할 경우에도, 해지한 선례로서 굉장히 중요해 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 경우는 조금 그렇게 유예를 한다면, 이게 유예 하나하나 한 결과가 되는 1월2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적어도 1월 말이든지 2월말이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확실하게 분명하게 착공의지를 우리한테 밝히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OOO 위원

저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1월말까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 의견은 그거예요, 하려면 해주고 아니면 딱 안 되는 걸로 해

지를 하자 이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서 여지를 남겨가지고 1월30일 하고 그런 명분을 찾아보면 힘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해주려면 확 그냥 해주고 그냥 계속 연장을 하는 건지, 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죠?

000 위원

연장 한 번 더 하면 6개월씩.

000 위원

6개월인가요? 그렇게 한번 해주든가,

000 위원

그러면 6개월,

000 위원

아니면 말든가, 그거를 결정하자는 거죠.

1월, 2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000 위원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6개월 연장할지 말지를 전에 결정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간 사

원래 그렇죠.

000 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결정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후에 1월2일에 끝나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니까, 해지할지 말지는 저희가 다시 심의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간 사

그때 또 다시 심의해야 돼요.

000 위원

그렇죠?

위 원

그렇죠.

000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때 해지를 할지 연장을 할지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여기 1월2일까지 심의해주는 거는, 정 문제는 그냥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부위원장

그래요, 여기서도 어차피 1월2일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000 위원

1월2일 심의해드리고, 그다음에 되나 안 되나 봐가지고 해지를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부위원장

그때 가서, 1월2일에 가서,

000 위원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000 위원

깔끔하십니다.

000 위원

지금 전반적인 설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사업계획도 전혀 지금 짜임새도 없고 그래서.

000 위원

계속 말씀하셨지만 긴장감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되고, 그때 안하면 그때 정말 해지절차로 넘어 간다, 이게 결정이 돼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저번에 오셨을 때랑,

부위원장

태도가 달라요.

000 위원

전혀 저는 사실 지금 000이 더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000 위원

000가 없어.

000 위원

저는 그거는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000에서 00 오는 000 없다, 그거는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원칙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심의를 어차피 바로 하신다고 하면 그때 연장심의회가 되건 이게,

부위원장

해지심의회가 되건 연장심의회가 되건 그때 가서 하자는 거죠.

000 위원

안건이 다른 안건이라서, ‘과연 0000이 이거를 적절한 이유로 봐줄 것이냐.’라는 안으로 다시 오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됐던 안으로 별도로 올리셔야 될 안인 것 같고요.

오늘의 안은 이걸 건가 말건가라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안 하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해주시는 게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부위원장

어차피 1월2일까지는 되어 있는 거니까 1월2일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말거나 아니라는 말이죠.

1월2일까지 보고, 1월2일까지 안됐을 때 그 이후에 해지를 할 거냐, 연장을 해줄 거냐 그때 가서 심의를 하자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죠.

000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희가 여기서 몇 달을 더 연장하자는 근거가 없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000 위원

혹시 실무적으로 다른 문제 있어요? 지금 이안에 대해서.

관계자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결과입니다.

000 위원

아니지, 이게 지금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면 1월2일까지 지금 이게 뭐여,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 착수유예기간부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OOO 위원

그러니까요.

OOO 위원

사실상은 착수유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착수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1월2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그렇죠.

OOO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룰을 바꿔서 3월, 4월 갈 게 아니고, 아직도 결정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사실상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딱 결정하는 건, 1월2일까지 그냥 유예한번 해주는 거예요.

1월2일 착공 못했다,

부위원장

그럼 그때 가서 해지,

OOO 위원

그럼 다시 신청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심의를 받든지 해야지.

관계자

위원님, 말씀에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차 작년 9월 달에 심의결과가요, 유예하고도 즉시입주를 해지하겠다는 거거든요.

1월2일이 지나면 1월3일자에는 입주 해지회의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다만 그런데 심의를 그 당시에 열게 되면, 1월30일이나 2월 달에 열게 되면 그 사이에 착공해버리면, 1월15일이든 2월20일 사이에 착공을 해버리면 그때 와서 다시 심의한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유예승인이 나면 1월2일 지나면 입주해지행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심의가,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OOO 위원

자동해지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000 위원

자동해지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관계자

앞단 결과가요, 이번에 유예해주고 나면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즉시  
입주를 해지하겠다는 전차 정책심의위원회 결과이다 보니까,

000 위원

여기 써있네.

부위원장

아, 그 전차예요?

관계자

...하게 되는 건데요.

000 위원

미착수시 즉시입주계약 해지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미착수시 입  
주계약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즉시,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하기  
로.

000 위원

전차의 의결을 이렇게 한 거네요.

000 위원

그 의결을 바꾸면 되지 않아요?

관계자

그것도 가능합니다.

000 위원

‘차후에 이거 회의할 때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  
요?

000 위원

그거를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1월2일까지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가는 거고, 그 이후에 입주해지절차를  
밟는데, 규정에 의하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계약당사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계자

그렇습니다.



000 위원

의견 듣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듣고 판단을 하자.

000 위원

예, 그때 판단을 한 번 더 하자는 거죠.

의견을 들으라는 건 뭐냐 하면,

관계자

의견청취, 이거 올리기 전에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 만약에 해지가 결정이 나면 바로 입주계약 해지를 하려고요.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월12일 날짜 의견청취를 이미 기 시행 했습니다.

행정처분 경위를 보시면, '18년10월12일 날 이미 의견청취를 시행을 했습니다.

000 위원

그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건가요?

000 위원

의견 청취를 했다고요?

관계자

예. 2페이지 상단 중앙쯤 보시면, '18년10월12일 날 의견청취를 이미 기 시행을 했고요.

그래도 혹시 정책심의에서 입주해지 하라고 하면 절차가 진행이 됐어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000 위원

지금 변수가 건축허가가 12월24일까지 처리예정기한이니까, OO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반드시 24일까지 해주시고,

000 위원

아니 왜 OO에 책임을 묻니까?

000 위원

그러면 보완을, 보완과정이 혹시 소요될까봐 1월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설계변경도 9일정도 소요됐더라고요.  
일주일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2일로 그냥 가지죠.

000 위원

1월2일 외에는 방법 없어요.

000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방법이 없네요.  
하나 방법은 연말연시를 고려하여, 휴일을 고려하여 1월4일까지정도 하  
는 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그냥 예정대로 1월2일까지 해 주는 거로 하고,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때  
가서, 그때도 뭐 별,

000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1월2일 날 이 조건에 의하면, 전차 회의결과도 그렇고 1월2일 날까지  
착공 안 하면 3일부터는 그냥 해지가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매정하게 그냥 다.

000 위원

23차 심의회 전차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입  
니다.

000 위원

6개월 추가 한 것도 많이 기업입장에서,

000 위원

그때는 6개월 추가 연장을 하면서 6개월 넘어가면 즉시,

000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정을 한 게 6개월도 사실은 꽤 준 거거든요.

000 위원

제가 안타깝다는 게, 그때는 이렇게 자금에 대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됐습니다.’라는 말이 없었었거든요.

000 위원

긴장감이 없었던 건 맞고요.

000 위원

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성을 부여하고자 그렇게 의안을 했던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작년도 9월 달에 결정난건데요.

000 위원

이거는 그 기업만 해당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000 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그때 처음,

000 위원

일반적인 기준을 정했다는 거죠.

부위원장

그럼 결정을 하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세요?

000 위원

아니요, 없었습니다.

### 제1호 안건결론

부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시다마는, 결론적으로 1월2일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건은 해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세요?

000 위원

그때까지 착공신고서 제출,

부위원장

착공신고서 안 하면,

000 위원

제출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착공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부위원장

착공, 그렇습니다.

착공신고서로 해야 됩니까?

착공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까?

OOO 위원

착공은요.

관계자

착공신고처리,

부위원장

예?

관계자

착공신고필증일어,

OOO 위원

그러니까 신고서 제출하면 제출한 필증 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착공신고필증일.

관계자

1월2일까지가 돼야...

부위원장

착공신고필증일로 1월2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2호 안전**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시 가이드라인 마련**

부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안전에 대해서 두 번째 안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안전은,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 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심의 건입니다.

우선 간사께서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호 안건설명

### 간 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저번에 정책심의에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준공 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쪽에 보고 안건을 보면, 그때 말씀해준 걸로 방침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때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준공전입니다.

핵심사항은 8페이지 개선방안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앞에 저때는 건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고, 이거는 준공을 하기 전에 건축물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시설계획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 안은 ‘일단 대기업은 정책을 간소화 하는데 제외하자.’

물론 이 자체는 시장님께서 간담회 때 요청한 것 때문에 검토한 겁니다.

대기업은 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건축연면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면적 자체가 감소한 경우는 승인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연구시설면적 감소량의 비율에 따라서 규모가 감소가 많으면 정책심의위원회, 적으면 소위원회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이고, 그 기준은 일단 3%입니다.

3%인데, 과거에 보시면 저희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연구면적을 50%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40%로 바꾸었습니다.

보시면 8페이지 밑단에 보시면, 절차간소화 중간쯤 보시면 2013년9월 달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50% 요구했다가 40%로 다운시켰거든요.

다운상태에서는 3%이고 다운전의 상태로 하면 5%정도로 해서, 그때는 소위원회로 처리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소위원회를 통하게 되면, 두 달 세 달 정도 전략되거든요, 시간이, 그 정도 효과입니다.  
복잡한데 실제로 내용은 그게 핵심요소가 되겠습니다.

## 제2호 안전심의

OOO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건축연면적이 연구면적비율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게 건축계획을 설계하다가 공사하다가 전체볼륨이 막 커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구면적비율이,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줄어드는 그거를 저희가 몇 차례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그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결정을, 심의를 하면 되는 거죠?

OOO 위원

예.

부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OOO 위원

개선방안은 일단 대기업은 '절차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데 감소하는 경우는 안 된다, 비율 감소량에 따라서 심의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심의를 구분해서 한다.' 그 얘기죠?

간 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3%라고 정한 근거는 밑에 나머지,

간 사

예.

OOO 위원

만약에 3%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간 사

미달 되면 해주는,

000 위원

만약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가 넘는 경우예요.

간 사

그러면 간소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책범위에서,

000 위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3%가 초과했을 때 심의를 하는데, ‘해 줄거나 안 해 줄거나.’ 여기.

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000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0%가 넘으면 줄어드는 비율이 10% 포인트가 넘으면 그거는 안 해주는 걸로요.

간 사

원칙적으로요.

000 위원

너무 많이 연구면적 비율을 줄일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가 해주더라도요.

000 위원

소소한 변경까지 다 심사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죠?

000 위원

그렇죠.

000 위원

소소한 변경 소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000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기는 우리 위원회는 두 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 열리잖아요.

그분들한테 시기도,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일부러 쓴 거예요.

000 위원

가이드라인 밑에 있는 내용이네요.

부위원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의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000 위원

연구시설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까지 꼭 여기서 주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부분에서 나온 거죠?

간 사

그거에 근거해서 관리기본 계획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000 위원

그래서 우리 마곡산업관리 기본계획으로 잡은 거죠?

간 사

예.

000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어떤 기업체들이 우리 마곡 관련해서 뒤에 세 번째도 나오지 않습니까?

간 사

예.

000 위원

‘연구면적이 꼭 이렇게까지 커야 할 필요성을 갖다가 의무조건을 달아야 되는가.’라는 게 이게 의문이죠.

간 사

저희들 마곡사업,

000 위원

좋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고자 해도, 여기에 분양에 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업체도 많다는 말이죠.

간 사

그럴 수 있죠.

000 위원



여기 뒤에 보면 이따가 3번에 나올 겁니다마는, 연구시설 처음에 분양을 따기 위한 업체의 어떤 성실성이나 그 업체가 앞으로 전망성, 희망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분양에 준한 부분에 맞추다보니까 분양을 받아놓고 나서 그 후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이거죠.

꼭 이것에 준해 줘야 되는 건가, ‘좋은 성실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구시설이 그렇게 까지 꼭 필요한 요건이 돼야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간 사

저희들 마곡이 R&D,

부위원장

R&D 단지.

간 사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제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라든가 경기도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시이기 때문에 제조베이스를 하기 힘들다, 오염도 생기고 등등 있기 때문에 소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곡은 순수한 연구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40%, 50%라는 게 나왔습니다.

OOO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O같은 경우는 연구중심의 산업단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구소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만, ‘일반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봐줘야 될 거냐.’라는 거죠.

간 사

중소기업 쪽에 연구가 포커스가 되는 기업들만 마곡으로 모시는 게 원래 정책목표였거든요.

OOO 위원

그럼 벤처산업, 벤처 하는 그 부분에 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산업시설 갖다가 할 부분은 공간을 구조하고 연구시설로만 가야 부분에서 적정성 여부가 맞는 건가, 이 부분에서 조그마한 사실 연구라는 게, 한 두 명의 벤처로서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갖다 큰 면적을 갖다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간 사

그 면적을 저희들이 R&D센터라고 5개의 시설,

OOO 위원

그거는 좋아요.

간 사

예.

OOO 위원

여기예다가 꼭 기준을 맞춰서 분량을 하다보니까, 이따가 3번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OOO 위원

기본적인 틀의 문제인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쪽 가다가 연구가 중요하니까 연구면적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그러다가 ‘이게 맞냐.’라는 논의들 이게 쪽 지금까지 흘러왔었거든요.

OOO 위원

상위법이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OOO 위원

그런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는 연구단지다, 그러려면 연구면적 비율이 일정 부분 있어 된다.’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요.

OOO 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실제 대기업에서 지금 좋은 아이템들 가지고, 새로운 신개발을 하는 부분이요, 많은 연구단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두 명의 연구에 의해서, 이게 상품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0층, 15층 건물을 지어 놓고, 여기 연구시설을 40%, 50%를 갖다가 준해야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산업경쟁활성화 되는 부분에서는 여기에 입찰 자체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해놓고 나서, 이따 3번에 나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변경을 하고 증축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왔잖아요, 1번에도 나왔잖아요, 전부 다 본인들이 처음에 의도들에 의해 연구시설을 갖다 갖춰가지고 들어온 회사들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사업계획성 없이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분양을 받을 만한 고가의 점수를 받고자 우선 분양 받고 보자, 왜, 차액이 너무 많으니까 일반분양에서는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1억 단위가 되는데, 여기서도 천만원정도의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기준이죠? 몇 년까지 묶어지는 게?

000 위원

5년.

000 위원

5년 후에는 매매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간 사

사업개시 이후.

000 위원

예, 그런데 사업개시 이후 5년 후 지나면 하는데, 다시 입주기업은 그 여기에 맞는 입주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건에 맞는,

000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기업 자격심사 해가지고, 심사통과 된 기업하고 매매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관리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네요.

000 위원

아직은,

간 사

정책 틀을,

부위원장

틀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OOO 위원

이게 모든 걸 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OOO 위원

지금 현재 실제 기업들한테 토지분양 하는 거 1개 필지 남았고요.

나머지는 다 팔렸고, 지금 현재는요.

그 외에 유희부지, 유보지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쓸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추가적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OOO 위원

별로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은 있죠, 계속.

다 못 채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은 공공이 뭘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안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OOO 위원

기준 안대로만 해서 가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요.

간 사

지금이라도 용지를 달라는 기업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OOO 위원

여기 처음에 분양을 받을, 매매당시에 계획서에서...와서 지금 여기도 10페이지 같은 경우도 됩니까?

전부 다 지금 다 변경을 시키잖아요.

다 변경 됐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결국 허가를 득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도 변동이 있었다면 이거는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3% 이내의 부분만 아니고, 외에는 전부 다 이걸 취소시켜야 되면, 다

이게 맞는 건가요?

000 위원

그러니까, 예.

000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매매할 당시, 분양에 준해서 본인들 소유로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문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거란 이 말이죠.

000 위원

어쨌든 큰 줄거리에서는 저희들이 고수한 연구면적비율을 대부분 충족을 하고 앞으로 들어 올 텐데, 일부 전체 연면적이 바뀌면서 연구면적비율이 줄어든다거나 특수한 경우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허용을 하는 거죠.

큰 줄기를 지금 현재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생기고 실제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새로운 보완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바꿔줘야 돼요.

기본 계획 자체를 바꿔줘야지, 상위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만 되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나가야지, 상위법이니까 무조건 여기 준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에는, 이거는 산업단지 성격에 따라 틀리잖아요.

00나 00 이런데 하고 우리 마곡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000 위원

00님 말씀 끝나신 거죠?

000 위원

예.

000 위원

비슷한 의견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같은 생각이예요.

첫 번째 건도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고, 이 건도 사실은 배경을 보면, 시장님 요청사항이 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조금 간소화하자는 그 내용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고자 가이드라인

이 나온 것 같아요.

마곡지구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어쨌든 간에 분양을 받은 혜택을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게 금전적 이득이 됐던 안됐던 떠나서, 관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처음에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연구단지의 비율을 갖다가 몇% 하겠다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받으신 건데, 이런 것 갖다가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못 들어온 기업들도 많이 있고 형편이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불공정을 지금 현 정부도 그런 불공정 같은 것을 타파하자고 하는 상황에, 저희가 계속 이거를 심의를 받아가지고 변경을 해 주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40% 완화한 거에 대해서 그 10% 감소하는 비율에 따라서, 완화해 준거에 따른 변경에 대한 심의가 들어 올 건데, 그 범위 안에서만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원칙적으로는 불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OO 위원

이게 특수한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건축연면적을 100으로 당초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중에 40%를 연구면적비율로 한다.’ 이렇게 처음에 해서 분양을 받은 기업인데, 건축연면적이 100이 아니라 120으로 늘려서 연구면적 비율은 줄으면 안 해줘요, 저희는.

OOO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에 맞게끔 하자는 거죠.

OOO 위원

아니죠, 그래도 이게 건축계획이라는 게, 물리적인 개요로 딱딱딱 20%를, 만약에 이게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데, 연구시설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아예 승인을 안 해주고,

OOO 위원

그때는 안 해주고, 아예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주고.

000 위원

연구시설의 총 면적은 늘어나는데 비율은,

000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100에서 120%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100일 때 예를 들어서 40이었다고 그러면, 나눠가지고 120이 늘었으면 20만큼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 2, 8, 48이 돼야 된다는 거죠.

000 위원

비율을 지킨다는 거죠.

000 위원

예, ‘그 비율만큼 똑같이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원칙으로.

000 위원

기본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여기는 행정적으로 못하니까 심의위원회는 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 제2호 안건결론

부위원장

자, 그러면 얘기는 두 분 의견, 000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조례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큰 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오늘 여기에서 결정할 내용은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심의 안건, 의결 할거냐.’ 그런 문제를 우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받는 걸로 하고,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요한 참고의견으로 넣어서 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3호안건

#### 연구시설 면적비율 하향 사업 계획변경심의

### 제3호 안건설명

#### 간 사

조금 전에 심의했던 관련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을 때, 연구시설면적비율감소량이 10% 초과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승인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 전체를 깔고 일단 지금 케이스는 두 개다 감소비율이 규모가 큼니다.

규모가 큰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O하고 OO가, OO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미세하게 증가했습니다.

40㎡정도 증가했는데, 연구시설면적은 많이 강조되고,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장을 허용하다보니까 제조시설면적을 본인이 입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거를 든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연구시설 면적이 감소화 됐습니다.

두 번째 OO는 건축연면적도 840, 850㎡정도 증가되고, 연구면적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부대시설면적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전체 면적비율은 감소가 13% 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은 공장 같은 관계는 없고, 그냥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게 주목적인 것 같고, 앞에 OO는 공장, 제조시설 면적들이 같이 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업체가 와있겠지만 혹시 저희들이 추가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 OOO 위원

그러기 전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에 변경된 경로로 들어 왔었다면,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을까요?

간 사

12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걸 써놨는데요, 보시면, OO 같은 그 당시에는 단독으로 신청됐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쪽 보시면, 당초 입주기업 선정 신청시 OO는 단독으로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그 당시 봤을 때는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요.

두 번째 OO 같은 경우도 그때는 경쟁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격미달, 점수미달 600점 미만이면 자동미달 되거든요.

아예 그때는 탈락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런 간소된 비율로 보더라도, ‘2개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OOO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심의대상도 안되잖아요.

기본계획에 어긋난 범위인데요. 그렇잖아요?

간 사

약속을 안 지킨 거죠.

OOO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수준이었다면, 당초에 일개 업체만 들어왔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간 사

어쨌든 OO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는 공장,

OOO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는 그랬지만,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한 근거가 여기에서 나와 버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부위원장

이 규정 때문에.

OOO 위원

최고의 점수 이것에 준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000 위원

중소기업은 40% 이상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OO는 단독으로 들어 왔었고 하니까 경쟁관계가 없었던 거죠, 일단은.

000 위원

경쟁 관계에 있어서 그때 당시는 66.62% 아니었습니까?

000 위원

예, 그쪽에 사업계획 낸 게.

000 위원

당초에는. 다른 회사들도 40. 몇%로 들어왔다면 경쟁상대가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간 사

그 당시에는 참고로 50%였습니다.

000 위원

어쨌든,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50%인데, 지금 40%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법을 갖다 우리가 악용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000 위원

그러니까 이 두건에 대한 해당 실무부서 의견은, 어쨌든 지금 과하게 앞에서 2번 항목에서 10% 이상이면 이건 아예 미승인으로,

000 위원

안된다고 했잖아요.

000 위원

둘 다 이게 사실은 적격하지 않다.

000 위원

그러면 적격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우리가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데.

부위원장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는데.

000 위원

그게 아니라 2번 항목이 기준을 정해줘야지 그다음부터.  
오늘은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올린 거죠.

000 위원

‘3번은 2번에 준한다.’라고 여기다 드리면 되는 건가요?  
2번 앞에서 먼저 결정한 거에 준하면 둘 다 대상이 아니라는,

000 위원

그렇죠.

000 위원

그러면 더 길게 안 하셔도,

000 위원

2번이 오늘 심의안건이었기 때문에 3번으로 올렸는데,

000 위원

계약서상에 %가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간 사

처음에는 되어 있죠.

000 위원

처음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계약서를 고칠 수 없  
잖아요.

간 사

변경계약을,

000 위원

변경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 사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처음에 공장, 지분 때문에 공장을 생각하지 않  
다가 공장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운시켰단 말이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OO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공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예 허가를 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 공장...공장을 허용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거거든요.

사실 감소이유도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굳이 이유를 찾으려면 이유를 찾을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OOO 위원

그런데 2번에서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바꿔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부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OOO 위원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마곡산업단지에 정말 이 회사들이 유능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선망이 될 유능한 회사들이 들어오지 못한 방패막이가 여기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큰 요인이, 강서구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요.

OOO 위원

예. 어쨌든 연구면적 비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논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보수의 입장이고, 그게 무너지는 순간 마곡은 R&D 단지가 아니라는 거죠.

### 제3호 안건결론

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 OO하고 OO, 이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OO 두 건은 사실은 감소율이 10% 상당히 오바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안건에 준하면 이거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OOO 위원

의미가 불허예요?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심의불가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 사

가능한데, 승인해주지 않는 거죠.

부위원장

승인은 안 해주는 거죠? 불승인으로.

그러면 두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는 불승인 건으로 처리하는데 의결을 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의를 하되, 이거는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 제4호 안건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 제4호 안건설명

간 사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여기는 꼭지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현재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 지식센터 건립할 적에는 건축연면적이 20%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용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업이나 공급을 하시는 분들도 용지를 살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지산 같은 경우는 개발업자가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는 유치업종입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변경의 꼭지를 보시면, 70 같은 경우 연구개발업이 굉장히 범위가 다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아이티비티하고 연계될 때만 한다는 각주를

하나 추가한 게 두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컨소시엄,

OOO 위원

17쪽입니다.

간 사

예, 17쪽 컨소시엄 분할기준 명확화인데요.

중전에 저희들이 한번 개정을 했었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최초 분양시 보시면 중전하고 변경에 보면, 다만 하고 산업용지 앞에 최초분양시라는 내용을 넣어서 150㎡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제도개선인데 이거는 저번 위원회 때 공실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바로 뒤에 보고안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관리기본계획에 넣어야 될게 있어서, 공실활용 입주절차에 대해서 신설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입주기업체가 공실활용 제공자는 관리기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변경해야 된다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선정절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공실활용입주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넣었고, 밑에 사후관리 계획에는 공실활용 입주자가 6개월 동안 사업승인을 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근거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게 주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보고안건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한 네 번째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시간상 저번차 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4호 안건심의

부위원장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네 가지 심의안건이죠? 이거.

간 사

예.

부위원장

이 심의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이해를 잘못했는데,

간 사

어떤 거요?

000 위원

13페이지요.

간 사

13페이지.

000 위원

지식산업센터 관련규정 신설 건 관련해서,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이,

000 위원

예. 처음에 저도 계속 왜 이걸 집어넣었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적  
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집어넣자는 게 아니고, 민간에 땅을 팔아서 그 민  
간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일부 분양하고 일부임대를 할건데요.  
그 회사는 안에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000 위원

아, 이런 사업자들은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다?

000 위원

땅을 사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자,

간 사

설치한 자,

000 위원

그자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입니다.

000 위원

사업목적은 추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000 위원

입주업종에,

000 위원

입주업종.

간 사

입중.

000 위원

이게 부동산 공급업이 이게 뭔가요?  
부동산임대업하고 공급업이 다른가요? 코드가 같은데.

000 위원

코드가 다른데.

000 위원

위에는 112, 아래는 6822.

간 사

디벨로프로.

000 위원

R&D 센터를 사서 짓는 자.

000 위원

그러니까 저희 마곡지구에 들어와서 분양을 받아서,

간 사

개발을,

000 위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000 위원

건립하고, 그거를 분양하고 임대한다.

간 사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000 위원

분양하고 임대한다.

000 위원

그 사람, 그 업, 그 자적, 그 회사.

000 위원

그렇죠.

000 위원

그 회사도 거기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요.

000 위원



입주업종이 입주자격이니까?

000 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밑에 신설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임대업이나 공급업이.

000 위원

그럼 이게 앤드인가요? 오알인가요?  
공급과 임대는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급만 해도 일단은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000 위원

그거는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000 위원

앤드인지 오알인지.

간 사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시면, 건축연면적이 20%이상 임대운영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한다면, 지금 공급만 순순히 하는 건 안 됩니다.  
분양해서 나가버리면 안되기 때문예요.  
20%도 없으면 지금 말씀한 것이 오알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앤드 가능성이 많죠.

000 위원

앤드인거죠? 예.

간 사

예, 앞에 20% 때문에.

000 위원

첫 번째 넣으신 거에 대해서, 딱히 뭐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나,

간 사

20%요?

000 위원

예, 처음에 20% 이상을 임대운영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사실 분양하고 끝내는 게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를 가지고 운영하신다.’라고 얘기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지는 거죠.

000 위원

그렇겠죠.

000 위원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부동산임대업하고 공급을 같이 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성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위원장

그렇죠.

000 위원

그래서 아까 앤드나 오알이냐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얘기한대로 되면 두 개를 다 하시는 분 아니면,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000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에요.

000 위원

예, 그래서 아까 확인하신 거죠.

000 위원

이거에 대한 거는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강서구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고 나면 수분양자들이 자기들이 관리단을 만들어요.

위탁을 하거든요.

관리단이 전부 다 우리가,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전부 다 분쟁을 거치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그걸 다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공급한 사람이 거기 20% 미만으로 하고 자기가 직접 지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000 위원

어려워 올 것 같아요.

OOO 위원

‘제한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간 사

그런데 지금 R&D센터가 다른 데랑 달라가지고, 사업용지 속에 있거든요.

사업용지는 분양가의 최대한 15% 이상 이익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가격하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발자가 그만큼 이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그냥 두면, 개발자가 그 이익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산 속에 들어오는 근생시설 하고 업무시설이나 상업적 근생시설 사실상 차이는 없어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개발 일을 다 디벨롭 하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그중에 최소한 20%는 임대를 줘라 하는 게 있고, 20% 쪽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설치관리 하는 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했을 경우에는 관리단이 저 상태로 집합건물에 그런 법칙이 있다 되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단이 조성되더라도 아니면 설치하신분이 개발할 때 조건을 달 거예요.

지금 제가 별도로 참고해가지고 하나 봤는데, 여기 다음 때나 그다음 때 길 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세상은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하시라는 정도고요.

저희들이 내년 3월 달, 2월 달까지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2, 3월 달, 그래야만 토지를 사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을 짤 때, 사업성 분석할 때 제한요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집합건물처럼 분양해서 들고 나가면, 관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사업단 전체의 의견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토지를 매각할 때부터 이 조건을 달 건지, 영속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그런 걸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로 분양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간 사

산업단지요?

000 위원

예.

간 사

현재는 없죠.

000 위원

아니 지식산업센터를,

000 위원

지을 때요?

000 위원

지을, 지을, 분양해서 지을라고 하는 계획이 몇 개있나요?

000 위원

15개요.

000 위원

15개요? 아, 15개.

15개인데 하여간 ‘직접임대비율은 15% 이상해라.’ 하는 조건,

간 사

20%.

000 위원

20%.

000 위원

이상이에요.

000 위원

R&D 기업만 들어올 수 있는,

간 사

글쎄, 그거는 그래서 참고...

OOO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공실패는 결국에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같이 한다는 것, 그거하고 같아요.

같은데 대신 여기가, 20%는 어디서 나왔지? 여러분들이 뭐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뭐지?’ 하는데 ‘이런이런 용도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좋겠다.’ 의사결정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뭐가 이렇게,

관계자

SH에서 용역을 진행했구요.

30% 이상은 여유가 있었기에 수익이 남는 겁니다.

임대비율을 30%하더라도 이익이 남는 걸로 되어 있고요.

총 40%까지 가더라도 남는 걸로 되어 있고요.

OOO 위원

토지분양 가격에 대비해서?

관계자

예, 맞습니다.

토지분양가랑 건물투자비까지 포함한 그 금액에서 30%까지 남은 임대비율이 하더라도, 우리 시가 1.0이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관리기본계획상 그거보다 낮은 20%까지 해주시면, 나머지는 ...진행하는 범위가 20%는...해서 할 수 있는...20% 나오는 겁니다.

OOO 위원

최저한도로 하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땅 토지분양공급을 할 수도 있고요.

OOO 위원

저 아까부터 계속 저를 맴맴 도는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회의를 지연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까 들어온 업체가 5년 뒤에 매각을 할 때 조건심사를 해서 매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간 사

그렇죠.

000 위원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을 한 이곳은 역시 우리,

000 위원

예, 할 겁니다.

왜냐하면 R&D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000 위원

기준이 가야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들어있나.

000 위원

그거는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 사

참고에 그런 기준이, 디테일하게 되지 않아서요.

000 위원

20% 얘기는, 나중에 설명을 지금 하신 것처럼 설명을 붙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000 위원

예.

000 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비씨가 이상 나온 거는 가동률이나 이런 거 얼마로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서, 100% 찻을 때 40%인지, 80% 찻을 때 40% 인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간 사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토지분양가가.

000 위원

그러니까 뭐 저는 20%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 임대료 해서 많이 모셔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했을 때 별 문제없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거기에서 그런 근거자료들이 있으면 저는 별로 다른 얘기들은 없습니다.

**제4호 안건결론**

부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네 가지,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네 가지 심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고안건에 대해서요.

## 보고안건

1. 마곡산업단지 입주관리 제도개선 추진계획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연장) 계획
3.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토지 기부채납 추진계획
4. 마곡산업단지 M-밸리 포럼 구성 및 운영계획

5-1 2018 서울 마곡 국제 컨퍼런스 개최결과

5-2 컨퍼런스 연계 2018 M-Valley 테크 콘서트 개최 결과

## 간 사

첫 번째 건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저번 차에 설명을 한 거고, 그걸 다시 방점읽기로 저희들 참고로 넣었고, 보시고 혹시 나중에 의문 나시면 연락주시고요.

두 번째 마곡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식물원이 다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연장하고요.

그렇게 2년 연장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부분점검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OOO 위원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2018년 올해 말까지인데 기간이 2년 연장을 하는 거고요.

일부 덜 돼서, 그거는 불가피한데, 부분적으로 된 부분들은 준공처리를  
부분준공을 하는 건데, 강서구에서,

간 사

협조를.

000 위원

SH에서 잘 좀 전향적으로.

000 위원

전향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싱크홀도 생기고 뚫도 생기고, 우리가 보도를  
다 푼 게 되는데, 하수도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상하수도 공급 도시경관 전부 다 SOC시설 인  
수인계 했는데, 그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입니다.

부분준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용지거든요.

주거용지 14개 단지가 지금 현재, 14개 단지가 다 돼서 했는데, 토지준  
공이 안되다 보니까 건축물은 준공이 되고 지적은 확정이 안돼서, 매매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 부동산하고 SH공사하고,  
SH공사 그걸 하고 있고요.

간 사

측량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1지구가 주거용지잖아요.

거기는 부분 준공 쪽 가는데, 2지구 산업단지 하고 저쪽에 있는 내용은  
3 지구는 서울신관하고 이쪽이니까, 2 지구에 관한 기관시설은 우리도 협  
조를 하는데, 별로 SH공사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꾸만 미  
뤄요.

빨리빨리 고치라고 했는데, 서남권사업과에서도 푸쉬 좀 하세요.

000 위원

예, 알겠습니다.

000 위원

나한테만 다 주지 말고.



## 간 사

30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참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확보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부지 공개대상이 5% 해가지고 10만㎡중에서 현재 공공지원센터, 저희들 최근에 서울 앰플러스 센터하고 융합캠퍼스 부지가 이런 걸로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올 3월 달에 공공기여를 토지도 안 받고 조성원가에서 5% 이윤을 붙이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사항만, 공공기여는 이렇게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네 번째 32페이지, 마곡산업단지가 조성도 되고 사업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조를 M밸리포럼이라고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뒤에 그림을 보시면, 34페이지 보시면 표를 보시면 전체 운영위원회가 위원장님이 2부시장님하고 자문단장님을 공동위원장을 하시든지 해서 만들고요.

그 밑에 보시면 M밸리자문단이 있고 기존에 입주기업체, 정책심의위원회, 마곡발전기금위원회 쪽 되어 있고요.

그중에 빨간 걸로 된 M밸리자문단은 기술산업홍보기업, 33페이지 표를 보시면 나옵니다.

M밸리 자문단 주로 기술 쪽입니다.

첨단기술 쪽, 산업단지 쪽, 기업지원 쪽, 홍보마케팅 쪽, 이런 걸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자문과 논의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좋은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풀로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얼마 전에 12월초에 컨퍼런스 개최 했는데 결과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정책심의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주제를 미리 받아서

차근차근, 아까 OO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건도 연구면적 같은 것도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주제를 사전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예, 그러면 오늘 보고 안건과 심의안건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다, 예.

간 사

이거는 별첨으로 제가,

부위원장

예, 별첨으로.

간 사

이거는 참고로 해서 가져가셔가지고 시간 나면, 이게 다음 안건 때는 논의를 함께 할 생각이거든요.

다음이나 그 다음 쪽에, 말씀한 것처럼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업종을 현재 연구단지처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라 굉장히 업종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여기는 산업용지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연구단지처럼, 연구소처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처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제가 필요하냐 이거든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유시설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이냐 그런 쪽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시설비용, 지산에도 보면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근생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충동적 여지가 많습니다.

비용부분, 그다음 분양가 임대료 통제 할 것이냐, 임대비용 20%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 분양 할 적에는 비율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글로벌 같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전문가도 소개해주시면 그전에 토의를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안건으로 만들어서 다음이나 그다음 적어도 3월 달까지는 결정이 돼야

공고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보고와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오버된 가운데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 다 끝났고요.

39차 정책심의회가 올해로써 마지막을 마무리 하고, 40차 정책심의회  
회는 2019년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폐회 17시35분(2018년 제39차 정책심의회)